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란 착취의 중단일 뿐

■ 6월 24일 인천지방법원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2021가합61290)> 사건에서 현대제철(주)(이하 ‘회사’)가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이하 ‘지회’)에 청구한 금액중 일부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회사가 지회의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청구한 내용과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역	금액(약)
생산차질 손해	287억
자회사 등 외주업체 투입비용	82억
정규직 초과근로수당	11억
선박 체선료*	12억
보안용역 투입 + 차벽용 버스대절	34억
정규직 상해 치료비	2백5십만원
1) 총 손해액	428억
2) 총 손해배상 청구액	200억

*체선료 : 선박이 항구에 정박하여 짐을 싣거나 내리는 데 필요한 시간을 초과하여 머무는 경우, 그 초과 시간에 대한 벌금으로 선주에게 지불하는 금액

법원은 회사의 200억 청구액중 비정규직 파업으로 인해 현대제철 소속 직원들이 초과근로를 한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1,183,103,306원의 절반인 591,551,653원(약6억원)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 법원은 쟁의행위와 관계가 없거나 회사의 입증에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우리는 쟁의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실을 노동자에게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에 반대합니다. 노조의 쟁의행위는 당연히 회사의 손실이 따라옵니다. 회사가 파업으로 인해 손실을 입지 않는다면, 그리고 노동자들이 그 손실을 갚아야 한다면, 노조와 회사는 동등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노조는 항상 회사와의 협상에서 밀리게 됩니다. 노조의 유일한 무기는 ‘쟁의권’입니다. 노조법 3조를 시급히 개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대제철비정규직 파업이 ‘불법’ 이라고?

■ 이번 판결의 핵심적인 문제는 지회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2021년 쟁의행위중 하나인 ‘통제센터 점거투쟁’을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의 행사”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서 반사회적 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확보하고 있던 쟁의권의 의미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법원이 불법행위라고 판단한 통제센터 점거

와 법원에서 인정된 손해인 정규직의 초과근로비용 사이의 관계도 명확치 않습니다. 통제센터 점거행위가 생산현장에 투입되는 정규직의 업무증가로 이어졌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법원은 통제센터 점거행위가 불법이니 파업도 불법이고, 그래서 회사의 손실인 정규직 초과근로수당을 배상해야 한다지만, 우리는 통제센터 점거와 여타 쟁의행위에 대한 판단을 별도로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통제센터 점거는 여러 쟁의행위중 하나였음에도, 모든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2021년 여름, 자본이 먼저 도발했다

■ 법원은 2021년 지회가 왜 파업을 했고, 통제센터를 점거했는지,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법원은 모든 사태의 원인인 자본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2021년 파업투쟁 이후 회사 스스로가 반성하지 않고 ‘결자해지(結者解之)’의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파가 소송 등으로 남아 여전히 노사관계가 꼬여있습니다.

2021년 당진에서 벌어진 당시 상황을 되돌아봅시다. ‘불법파견’ 1심 선고를 앞두고, 회사는 최대한 소송자를 줄이고, 다시는 소송을 하지 못하게 ‘소송취하서’와 ‘부제소동의서’를 현장에 배포합니다. 갑자기 ‘덩치만 커진 하청업체’에 불과한 ‘자회사’를 설립하더니 두 가지 ‘포기각서’를 작성해야만 입사를 시켜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사축하금으로 돈 몇 푼 쥐어줍니다. 동시에 하청업체를 일제히 폐업시켜 “자회사 아니면 해고”로 현장을 초토화시킵니다.

모든 과정은 속전속결로 불과 3개월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면 지회의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지회는 고용안정과 자회사 저지를 걸고 총파업과 통제센터 점거투쟁에 나섭니다.

■ 현대제철이 먼저 시작한 싸움입니다. 자본의 불법파견 회피를 위한 자회사 꿈수는 실패했습니다. 곧 불법파견 소송 2심 선고가 다가오고,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조법 2조 개정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파업으로 인한 회사측의 손실이란 착취의 중단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현대제철 원청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착취해 가져간 이윤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본인이 짠 X은 본인이 치워야 합니다. 그 시작이 노조에 대한 손해청구 소송을 철회하는 것입니다. 🙏